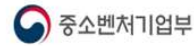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기업 성과공유 및 간담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지원센터 우선구매팀

2025. 12. 18(목).~19(금) / 서울(강남), 대전(무역회관)



목 차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감사인사	2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과안내	3
3. 공공구매제도 실무교육 - 공공구매	8
4. 제도 관련 실무 - 우선구매제도	12
5. 제도 관련 실무 - 시범구매제도	22
6. '26년도 공공구매제도 변화(안)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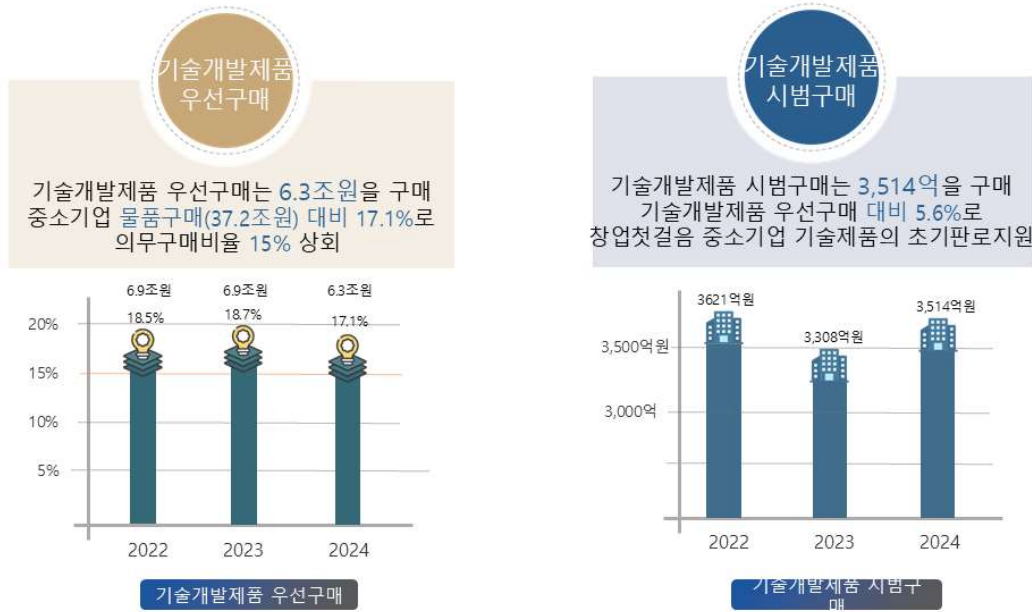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감사인사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과 안내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과 안내 - 조달성과



4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과 안내

2018년 시범구매제도 도입 이후 **2,177개 선정**
 연 평균 유효제품 **약 800개 유지**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공공기관) **560개** ('25.12.1일 기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목표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기물품구매액의 1.2~1.5% 이상 시범구매제품 구매
-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중기물품구매액의 1%~2% 이상 시범구매제품 구매



- ◆ 연내 유효제품 **약 800개**의 시범구매제품 대상 **3,700억원대** 시범구매 할당 시장 구축
- ◆ 초기 창업 또는 조달 첫걸음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제품 공공납품 초기 경험을 안정적으로 제공
- ◆ 2018년 시범구매제도 참여 후 300억 시범구매 실적 달성 창업기업 배출 (해당기업 보유 시범구매제품 합계)

5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과 안내 - 주요 공공기관별 구매액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시범구매실적 262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 1,710억원 시범구매 진행

구분 (광역기준, 산하기초단체 포함)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액 (억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액 (억원)	비율(%)
서울특별시	3,415	197	5.76
부산광역시	1,218	22	1.83
대구광역시	588	31	5.24
인천광역시	944	91	9.69
광주광역시	294	23	7.89
대전광역시	593	22	3.78
울산광역시	532	39	7.26
세종특별자치시	145	4	2.99
경기도	6,922	563	8.13
강원특별자치도	1,558	68	4.38
충청북도	1,745	62	3.55
충청남도	1,675	113	6.72
전북특별자치도	1,192	41	3.42
전라남도	2,753	115	4.19
경상북도	3,117	145	4.65
경상남도	2,290	138	6.03
제주특별자치도	473	35	7.47

6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과 안내 - 주요 공공기관별 구매액

2024년도 주요 공기업 준정부 구매실적 87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1,490억원 시범구매 진행

구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액 (억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액 (억원)	비율(%)
한국토지주택공사	1,249	213	17.06
한국도로공사	1,312	170	12.99
한국농어촌공사	1,242	128	10.34
한국철도공사	840	127	15.12
한국수자원공사	1,091	91	8.30
한국수력원자력(주)	642	79	12.37
한국남동발전(주)	294	51	17.37
국가철도공단	361	44	12.30
한국중부발전(주)	274	40	14.79
한국동서발전(주)	346	39	11.38
한국서부발전(주)	240	35	14.78
한국환경공단	522	30	5.83
한국지역난방공사	144	18	12.33
한국공항공사	177	16	9.19
한국남부발전(주)	212	16	7.60
국민건강보험공단	122	15	12.67
한국석유공사	22	11	52.08

7

3

공공구매제도 실무교육 - 공공구매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관 - 중기부 소관 공공구매제도 현황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관 – 공공구매제도의 특징

공공'조달'과의 차이

- '조달'의 목적 :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가격, 품질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
- '공공구매'의 목적 :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을 지원하거나 산업 발전 도모, 또는 주요 정책 실행을 지원

적용 법령 및 범위

- '공공구매' 관련 법령에서는 주로 공공부문이 따라야 하는 의무를 규정
 - * 예) 판로지원법 : 중소기업제품(총 구매액의 50%), 기술개발제품(중기물품구매액의 15%) 구매 목표 비율 제시
- '공공구매'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는 계약, 구매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야 함
 - * 예) 서울특별시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함

[참고] 기타 의무구매 대상 제품 (중기부 소관)

의무구매 대상 제품

< 중소기업제품 >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

< 여성기업제품 >

물품 및 용역 각 5%, 공사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

< 장애인기업제품 >

공공기관 구매총액 중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

< 창업기업제품 >

공공기관 구매총액 중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

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실무

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혁신·기술개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R&D재투자) 의욕 고취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3조, 제14조 등

☑ **대상**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25년 12월 기준 총 13종 → '26년 1월 변동)

우선구매 대상 세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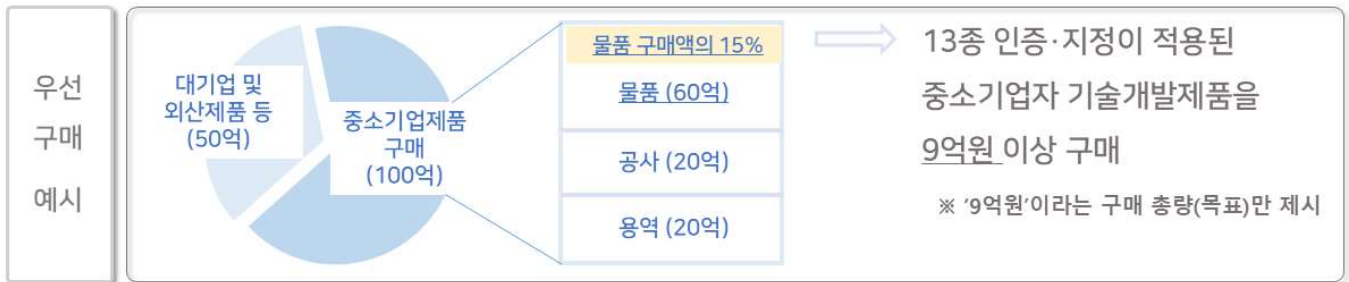
- | | | |
|-----------------|-----------------------|---------------------------------------|
| · 성능인증 (중기부) | · 재난안전제품 (행안부) | · 녹색기술 제품 (산업부 등) |
| ·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 · 혁신제품 (조달청 등) | · 산업융합품목 (산업부) |
| · NEP (산업부) | ·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청) |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품
(각종 허가등의소관 부처) |
| · GS(1등급) (과기부) | · 수요처 지정 기술개발제품 (중기부) | · 물산업 우수제품 (환경부) |
| | · NET적용제품 (산업부 등) | |

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내용

관련 개념

-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등 (판로지원법 제2조)
-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판로지원법 제2조)
- ◎ 제품 : 물품 + 공사 + 용역을 포괄 (판로지원법 제4조)

☑ **내용** : 공공기관은 당해년도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목표로 중소기업자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



14

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방법

☑ **방법** : 공공기관이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제품을 찾아 구매

☑ **절차** :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기업에 연락하여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조달플랫폼에서 기술개발제품을 선택적으로 구매

기술개발제품 플랫폼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15

4. 제도 관련 실무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목록 확인 : 인증서 확인 시 유의사항

인증·지정서 예시

인증/지정/사업명	근거법령
성능인증	판로지침법 제15조
우수제품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GS인증 ·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NET(신제품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NET(신기술인증)	[과학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재난안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농림축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교통] 국가교통고용체제효용화법 제102조 [특재] 특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우수조달 공동상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단조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공공부문) 2) 민간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0조 (단조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3)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 성공제품 (공공부문)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녹색기술인증 ·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산업융합특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산업융합 혁신성 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물산업 우수제품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4. 제도 관련 실무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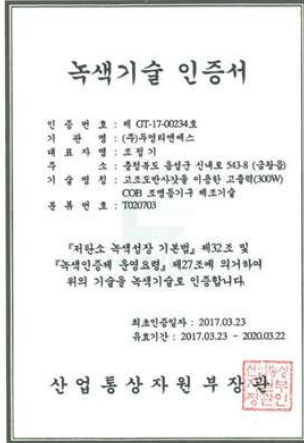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목록 확인 : 인증서 확인 시 유의사항(NET)

< 부처 별로 관련 근거와 서식이 상이 >

< 관계 행정기관장이 상용화를 확인한 경우에 우선구매 대상으로 인정 >
*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4. 제도 관련 실무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목록 확인 : 인증서 확인 시 유의사항(녹색기술, GS)



< 녹색기술도 제품 확인서 필수 >
*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 GS인증은 1등급만 우선구매 대상 >
*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4. 제도 관련 실무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목록 확인 : 인증서 확인 시 유의사항(유효기간 없는 인증)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획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 까지 우선구매 대상

*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4. 제도 관련 실무 - 우선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계약 - 수의계약 가능 여부 주의사항

- 조달사업에 관한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품
- 우수조달공동상표는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 인증이지만 고시에 따라 가능 금액 수시 변동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

2022년 12월 20일

조달청장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
- 공사: 88억 원

20

4. 제도 관련 실무 - 우선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계약 - 수의계약 가능 여부 주의사항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 기술개발 인증이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만 수의계약 가능, 우선구매 실적인정 가능



수의계약용 확인서

2022년 10월 10일

성과공유재혁신추진본부의 장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Korea Foundation for Cooperation of Large-Sized Business, Rural SMEs

21

5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실무

5.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도입배경

☑ 추진배경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강화**

쓸림현상

기존 구매제품 선호
쓸림 현상 심각

기존 구매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과
특정 기업·제품 지속 구매로 쓸림 현상 발생
(기술개발제품 납품 금액 상위 10%기업이
전체 납품 금액의 약 65%차지)

시장진입

창업 및 조달시장 초기진입(첫걸음기업)
공공시장 진입 어려움

공공기관이 중기제품 구매 시
업력 및 납품실적이
많은 기업의 제품 선호
(창업, 조달초기기업 불리)

출처 : 창업기업실태조사,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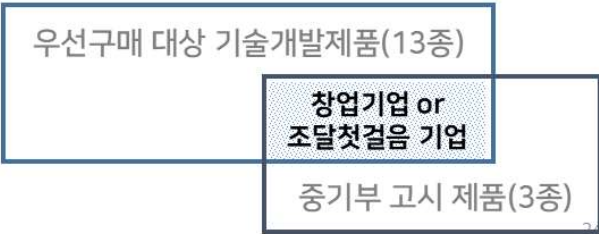
5.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개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우선구매 지원을 강화하여 초기 판로개척 촉진

☑ 근거 : 판로지원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등

☑ 대상 (기업·제품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업)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조달실적 일정금액 이하(조달첫걸음) 중소기업
-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 중기부 고시 제품(3종*)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과 유사한 맥락으로 지원되는 인증 등을 시범구매제도에 참여 가능토록 확대 (대상 : 중소기업 제품 / 목적 : 판로확대)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조달청)
- 우수발명품 (특허청)
- 상생협력제품 (중기부)



5.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신청자격

연번	인증·지정명	소관부처	신청가능 과제		
			창업	일반	소액
1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	○	○	○
2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	○	○
3	NEP(신제품인증)	산업통상자원부	○	○	○
4	GS(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5	NET 신기술인증	과핵기술	산업통상자원부	○	○
		환경	환경부	○	○
		건설	국토교통부	○	○
		방재	행정안전부	○	○
		목재	산림청	-	-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계	농촌진흥청	-	-
		교통	국토교통부	-	-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	-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	-
6	우수조달공통상표	조달청	○	○	○
7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	○
8	재난안전제품인증	행정안전부	○	○	○
9	혁신제품	조달청 등	○	○	○
10	녹색기술제품	산업통상자원부 등	-	-	○
11	산업융합제품	산업통상자원부	-	-	○
12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통상자원부	-	-	○
13	물산업우수제품	환경부	-	-	○
14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조달청	-	-	○
15	우수발명품	특허청	-	-	○
16	상생협력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	○

☑ 시범구매 참여 신청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기업	창업기업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설립7년 이내)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제품	기술개발제품 9종 (국가수의계약 가능 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국가수의계약 가능 대상) · 단, 신청제품 공공기관 계약실적 제한 有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평가절차	자격검토 → 규격검토 → 구매평가 → 구매심의 → 제품선정	자격검토 → 구매평가 → 구매심의 → 제품선정	자격검토 → 구매평가 → 구매심의 → 제품선정
구매실적 인정	구매금액 전액 시범구매 실적 인정	계약법에 따른 소액수의 가능 기준 준용하여 실적 인정	

※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지원계획 공고'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 공지사항)

* 1번~13번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참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 대상 세부현황 (16종)

구분	인증/지정/사업명	근거법령	시행부처	
1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2	우수제품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조달청	
3	GS인증 *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NEP (신제품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5	NET (신기술인증) <small>*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 적용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small>	창업 일반 소액	[과학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재난안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농림식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보건 의료] 보건 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고등] 국가통합고통계계요율화법 제102조 [목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소액	[목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6	우수조달 공동상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조달청	
7	수요자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공공부문) 2) 민간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3) 성과공유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	
8	재난안전제품인증 혁신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행정안전부	
9	녹색기술인증 *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조달청 등	
10	산업융합혁신제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산업통상자원부 등	
11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	
12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13	물산업 우수제품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부	
14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벤처투자 등 록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	
15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조	특허청	
16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26



5.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내용

관련 개념

- ◎ 구매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의 공공기관 중 시범구매제도 참여를 신청한 기관
- ◎ 시범구매제품 : 시범구매제도 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개발제품
- ◎ 참여기업 : 시범구매제품을 보유한 기업

☑ **내용** : 중기부·한유원이 전문가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고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구매 촉진

지원
내
용

공공구매 촉진

제품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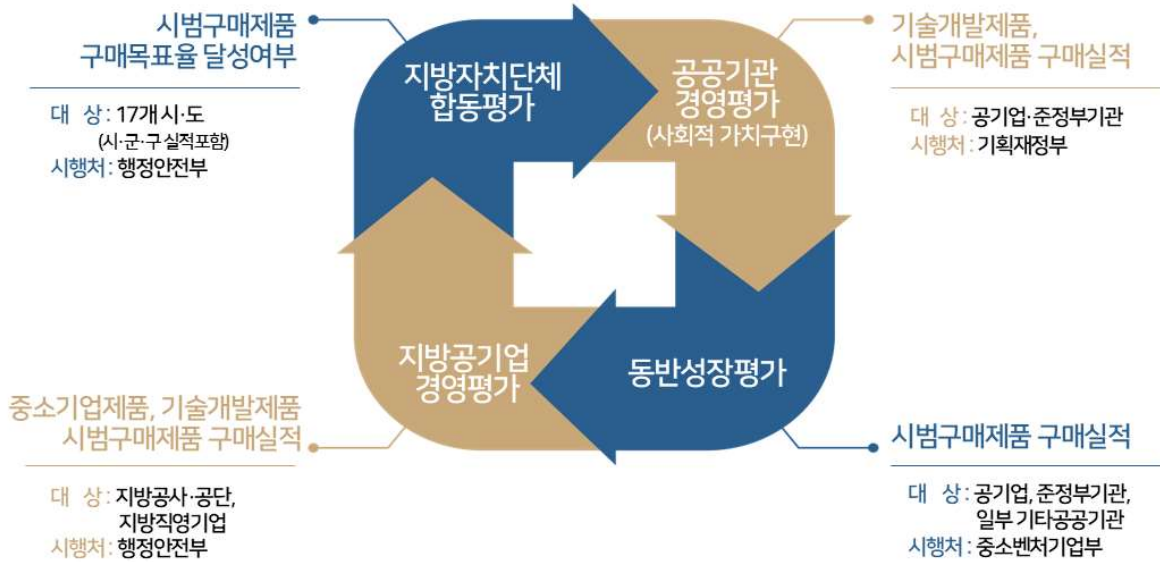
공공기관 교류 (전시회·상담회)

기타 후속지원

27



[참고]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



5.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절차

☑ **절차** : 중소기업이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신청 → 중기부 및 한유원이 공공기관 사용가능 여부 확인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시범구매제품) 선정

※ 선정기간 약 3개월 소요 / (현재)'25-4차 선정완료



5.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제품 지정(선정)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해당 여부에 따라 지정기간 차등 적용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완료되는 날까지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정
※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함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완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30

[참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시범구매 비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 구매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NEP, NET,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13종) * 우선구매 대상 인증 등은 중기부가 3년마다 지정
제품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중 필요제품 선택 또는 기업이 지방청을 통해 우선구매 요청
운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로지원법 제13조, 제14조
구매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로지원법 내 의무 구매 비율 명시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기존 우선구매제도의 강화(보완)를 위해 추진(2018~)

우선구매제도의 회색지대에 놓인 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을 별도 선별하여 공공구매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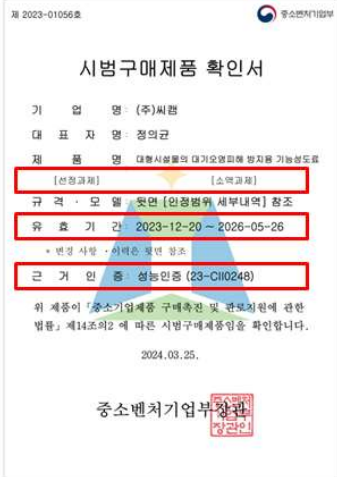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및 공공조달시장 초기 진입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중 중기부가 선정한 제품 * 선정 제품: "시범구매제품"
제품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에 참여중인 공공기관(구매기관)이 시범구매제품 중 필요제품 선택
운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로지원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구매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구매의무 없음 * 단, 지자체 합동평가 등 기관 경영평가 지표 내 시범구매실적 반영

31

5. 제도 관련 실무 - 시범구매제도

시범구매제품 구매 및 실적 관리 (지자체, 도·시군 기초자치단체 합동평가)

- 지자체는 시범구매제품의 가중치 여부를 확인후 구매하는 경향 존재, 시범구매와 상생협력인증을 중요시함



○ 산식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 (신기술제품 실제 구매율* / 신기술제품 구매목표율)×100
- * 신기술제품 실제 구매율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 100
- 시범구매제품 우선구매율 = (시범구매제품 실제 구매율* / 시범구매제품 구매 목표율)×100
- * 시범구매제품 실제 구매율 = (시범구매제품+상생협력제품)구매액×가중치 / 중소기업물품구매액 × 100
- ※ 가중치 : ① 관내 (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100%, 관외 (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120%, ② 시범구매, 상생협력제품을 동시에 만족하는 관외지역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가중치는 120% 1회만 적용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단위: 백만원, %)

구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A)	신기술제품			신기술 제품 구매실적 (D= (B/C) x100)	시범구매+상생협력이하 *시범구매제품)					시범구매 제품 구매실적 (E)= (F/B) x100)	달성률 (①×②)/2 *①②의 최하순. 2차단 100으로 계산
		금액 (B)	비율 (B/A) (C)	목표치 (C)		금액			비율 (D= (E/A) (F)	목표치 (F)		
관내 (G)	관외 (H)	소계 (G+H) (I)	관내 (G)	관외 (H)	소계 (G+H) (I)	관내 (G)	관외 (H)	소계 (G+H) (I)	관내 (G)	관외 (H)	소계 (G+H) (I)	
세도												

5. 제도 관련 실무 - 시범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 및 실적 관리 (지자체, 도·시군 합동평가)

-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시범구매제품의 가중치 여부를 확인후 구매하는 경향 존재 (SMPP 주소지 확인)

■ 기업정보

기업구분	<input type="radio"/> 창업첫걸음 <input checked="" type="radio"/> 첫걸음 <input type="radio"/> 창업 <input type="radio"/> 일반
기업명	(주)씨엠
담당자	조기현
담당자 이메일	zzokie@nate.com
주소	2544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40 309호

가중치 적용 여부

○ 산식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 (신기술제품 실제 구매율* / 신기술제품 구매목표율)×100
- * 신기술제품 실제 구매율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 100
- 시범구매제품 우선구매율 = (시범구매제품 실제 구매율* / 시범구매제품 구매 목표율)×100
- * 시범구매제품 실제 구매율 = (시범구매제품+상생협력제품)구매액×가중치 / 중소기업물품구매액 × 100
- ※ 가중치 : ① 관내 (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100%, 관외 (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120%, ② 시범구매, 상생협력제품을 동시에 만족하는 관외지역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가중치는 120% 1회만 적용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단위: 백만원, %)

구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A)	신기술제품			신기술 제품 구매실적 (D= (B/C) x100)	시범구매+상생협력이하 *시범구매제품)					시범구매 제품 구매실적 (E)= (F/B) x100)	달성률 (①×②)/2 *①②의 최하순. 2차단 100으로 계산
		금액 (B)	비율 (B/A) (C)	목표치 (C)		금액			비율 (D= (E/A) (F)	목표치 (F)		
관내 (G)	관외 (H)	소계 (G+H) (I)	관내 (G)	관외 (H)	소계 (G+H) (I)	관내 (G)	관외 (H)	소계 (G+H) (I)	관내 (G)	관외 (H)	소계 (G+H) (I)	
세도												

5. 제도 관련 실무 - 시범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 및 실적 관리 (공기업 준정부 일부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134개사)는 **동반성장평가**에서 시범구매 실적을 추가 점검 받음
- 동반성장평가를 위해 이들은 '**동반성장물**'에 입점한 **창업, 첫걸음 기업**의 시범구매제품을 집중하여 구매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실적

$$= \frac{\text{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액}}{\text{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목표액}} \times 100$$

달성률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0%초과
점수	2.0	1.7	1.4	1.1	0.8

- * 구매액 : 평가연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여 구매한 실적
- ※ ①창업, ②첫걸음, ③창업/첫걸음기업 제품구매 시 구매금액의 110%를 구매액으로 인정
- ※ 기타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 인정범위는 시범구매제도 관리지침 참고 (SMPP-시범구매-제도소개-지침 다운받기 - 별표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
- ☞ 소액과제 선정 시범구매제품의 경우 기본 인정 한도는 2,000만원임으로 지침 참고 ☹
- * 목표액 :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물품) 구매액 x 1.2%
- * 구매액이 없는 경우는 0점 처리

■ 전년도 중소기업제품(물품) 구매액의 1.2%를 목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데이터 기준, 백만원 단위로 계산함

■ 창업, 첫걸음기업의 제품 구매시 구매액의 110%를 적용

번호	이사회	제품안내	회사소개	유효기간 인도일	확인서	제품안내서
1		창업/첫걸음 테스트 고속기반도/전관리용 복사기 (후시제품보기)	기업번호 2024-00266 기업구분 창업 회사명 후진기업 테크노 소재지 태안 인용서 상영용	2026-04-23 (18회)	승	승
2		창업/첫걸음 노트 X 순채널계 커뮤니케이션 고속기반도/전관리용 복사기 (후시제품보기)	기업번호 2024-00128 기업구분 창업 회사명 유비쿼터스/코리엔스 소재지 서울특별시 인용서 우수제품물품	2026-04-23 (18회)	승	승
3		창업/첫걸음 군현장 설치 개선을 위한 군용계기 - 포수용기 ₩ 11,000,000 (후시제품보기)	기업번호 2024-00127 기업구분 창업 회사명 유비쿼터스/코리엔스 소재지 경기도 인용서 확인서	2024-10-28 (18회)	승	승
4		창업/첫걸음 API면 다중부업형식 제형물자(PE) - 이온교환기/가정용물 ₩ 77,000,000 (후시제품보기)	기업번호 2024-00123 기업구분 창업 회사명 일승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 인용서 확인서	2026-12-27 (18회)	승	승

34

5. 제도 관련 실무 - 시범구매제도

5. 시범구매제품 구매 및 실적 관리 (공기업,준정부,지방공기업, 기타공공 경영평가)

-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 공기업,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건강보험공단 등)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SH, 시설관리공단 등)

<평정점(P) 산출 산식>

$$P = 0.6 \times P1 + 0.4 \times P2 + P3, \text{ 단, } P \leq 100$$

<하위산식>

$$P1 = \left(\frac{B}{A} \times \frac{70}{X} \right) - D + 1, \text{ 단, } P1 \leq 100, \left(\frac{B}{A} \times \frac{70}{X} \right) \leq 90, X=0.15$$

$$P2 = \left\{ \frac{C}{(A \times 0.01)} \right\} \times 70 + D, \text{ 단, } P2 \leq 100, \left\{ \frac{C}{(A \times 0.01)} \right\} \times 70 \leq 90$$

$$P3 = E + F$$

<평가지표 설명>

P : 평정 점수

P1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이행 수준 평점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P2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비율 이행 수준 평점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정책비율은 중소기업물품구매액의 1%

P3 : 인증신제품(NEP) 구매비율 수준 평점(가점점)

※ 인증신제품(NEP) 구매비율은 인증신제품(NEP)이 포함된 품목 구매액의 20%

※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가 적용되는 품목 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P3=0점

A : 당해연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B : 당해연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C : 당해연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액

- 최근 기재부, 일부 기타공공 경영평가에는 성능인증제품 가점을 신설 ('26년 적용)
-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비 성능인증제품 구매율 (0.01%~30%) 최대 3점 가점

{당해연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구매율(%) - 직전년도 구매율(%)} × 10
직전년도 시범구매 구매비율이 1.5%이상인 경우 I2=10점

35

5. 제도 관련 실무 - 시범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 및 실적 관리 (소액과제 시범구매제품)

실적인정 기준

[별표 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

인증지정	지원과제	창업과제 선정제품	일반과제 선정제품	소액과제 선정제품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¹⁾		계약 또는 구매 금액 전액 (단, 당초 수요처에 해당하는 구매기관이 계약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²⁾)		계약 또는 구매 금액 (한도 누) ³⁾
그 외의 인증지정 제품		계약 또는 구매 금액 전액		

-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2) 당초 수요처에 해당하지 않는 구매기관이 계약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과제 선정제품 구매실적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 물품의 제조구매 시 적용되는 가격기준을 최대한도로 하여 시범구매 실적 인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기준

■ (소액)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기준]

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 계약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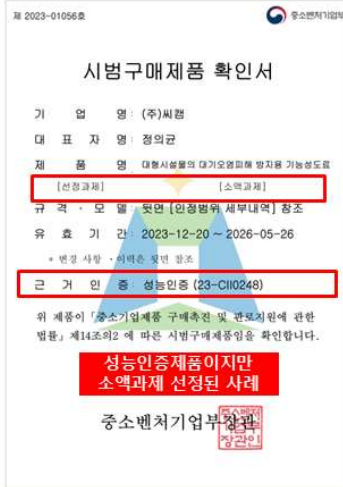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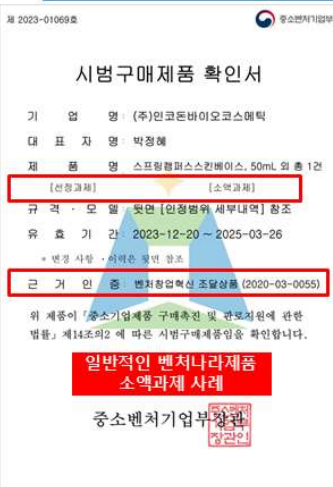
1. 여성기업지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6

5. 제도 관련 실무 - 시범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 및 실적 관리 (소액과제 시범구매제품)

소액과제 제품



시범구매제품 확인서상 선정과제 확인 필요

■ 시범구매확인서 상 소액과제 여부 확인 가능

■ 근거인증이 아래 3종일 경우 소액과제 제품이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2. 우수발명품
3. 상생협력제품

■ 근거인증이 우선구매 대상 인증일 경우에도 소액과제 선정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서 확인 필요

37

5. 제도 관련 실무 - 시범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 및 실적 관리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실적인정 기준

[별표 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

지원과제 인증·지정	창업과제 선정제품	일반과제 선정제품	소액과제 선정제품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¹⁾	계약 또는 구매 금액 전액 (단, 당초 수요처에 해당하는 구매기관이 계약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²⁾)		계약 또는 구매 금액 (한도 특) ³⁾
그 외의 인증·지정 제품	계약 또는 구매 금액 전액		

-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2) 당초 수요처에 해당하지 않는 구매기관이 계약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과제 선정제품 구매실적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 물품의 제조구매 시 적용되는 가격기준을 최대한도로 하여 시범구매 실적 인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기준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기술개발제품 기준]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은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 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 해당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불가 (소액 수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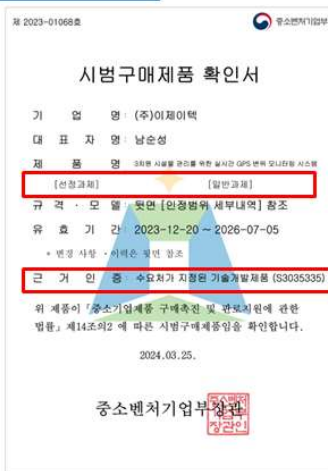
☞ 소액과제 선정제품 구매실적 인정기준 동일하게 적용

38

5. 제도 관련 실무 - 시범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 및 실적 관리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수요처지정형제품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기준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구매조건부 또는 성과공유제 등에 참여한 공공기관과 성공제품 판정 중소기업 제품간의 수의계약

Ex) 한국○○공사 - A 중소기업 제품 성과공유제 성공제품 판정서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에 선정된 제품

1. 한국○○공사가 구매 시 : 구매실적 한도 제한 없음
2. 그 외 기관 구매 시 : 소액과제 기준 적용

39

5. 제도 관련 실무 - 시범구매제도

Tip.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구매 실적 불인정 주요 사례

◆ (소액과제) '시범구매제품' 중 소액과제 선정제품의 실적 인정 기준은 2천만원

- 불인정 사례 ① 시범구매제품 확인서 유무만 확인 후 소액과제품 수억원 규모 계약, 구매

⇒ 1계약건당 2천만원까지 경영평가 실적에 반영

- 불인정 사례 ② 시범구매제품 중 다수 인증 보유 제품을 시범구매 근거 인증이 아닌 타인증 근거로 구매

* 예시) A 제품의 경우 시범구매제품 선정 당시는 벤처나라 인증만 보유하고, 추후 동일 제품으로 혁신제품 인증을 취득한 상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에는 반영, 시범구매실적에는 2천만원까지 경영평가 실적에 반영

40

5. 제도 관련 실무 - 시범구매제도

Tip.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구매 실적 불인정 주요 사례

◆ (구매일자) '시범구매제품' 의 인정 기준은 확인서 유효기간 내 계약 또는 구매일

- 불인정 사례 ① 시범구매제품 확인서 유효기간 내 미구매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인증 기간만 확인 후 구매한 케이스 (우선구매 실적 인정, 시범구매 실적 불인정)

◆ (모델명 불일치) '시범구매제품' 확인서 2페이지의 모델명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불인정 사례 ① 시범구매제품에 선정되지 않은 모델명 제품 구매

⇒ 제품 계약 시 사업자번호 + 세부품명번호 + 모델명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필요

◆ (수요처 지정형 제품) 수요처지정형 제품의 경우 참여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 구매 시 소액과제 기준 적용

- 불인정 사례 ① 타 기관 R&D성공 (구매조건부) 자격 근거 기술로 선정된 시범구매제품을 구매

⇒ 구매 실적 중 1계약건당 2천만원만 실적 인정

41

6. 기타 안내사항

☑ 한유원은 시범구매제품 목록을 공공기관에게 공문으로 발송 중 (분기별)

- ◆ 공공기관 담당자로 하여금 시범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고려 할 수 있도록 '공문 형태로' 발송
⇒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목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림

☑ 한유원은 공공기관의 예상 시범구매실적을 공공기관에게 제공 중 (매월 중순)

- ◆ 공공기관 담당자로 하여금 시범구매제품 조달거래내역을 상시 제공하여 실적 점검을 통한 구매를 독려
⇒ 일부 대형기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관은 공공구매실적 수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범구매 실적을 매월 집계하여 송부함으로써, 기관의 시범구매 목표달성 의지에 기여

☑ 시범구매제품 구매시 공공기관의 감사부담을 최소화 지원 중

- ◆ 판로지원법 내 시범구매제품 구매로 인한 기관의 손실에 대해 구매자 책임 면책조항을 운영 (고의성 중대 과실 면책)

'26년도 공공구매제도 변화(안)

6. '26년도 공공구매제도 변화(안)

지자체의 나라장터쇼핑몰 단가계약 구매형태 변화

- 조달사업법 제11조에 의해 동일 제품군이 나라장터쇼핑몰에 단가계약이 되어있으면, **미계약 제품 조달불가**
- 회사 제품이 MAS 공고 대상 제품이면, **사실상 쇼핑몰 미입점 시 제품 판매가 불가한 문제 발생**
- MAS 공고 대상제품이 아님에도, **경쟁사가 우수조달제품 입점시, 사실상 우수조달 미취득 시 제품판매 불가**



◆ 2026년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조달의무를 자율화 (경기, 전북 시범적용) 27년 확대

중소기업제품의 '직접생산' 규정 법제화

- 현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자' 한테 구매하면 실적이 적용 중이나 **'26년 폐지**
- 직접생산의 범위는 규정화 되지 않았지만, **B2G 영업에서 유통사를 통한 판매 전략 수립 시 불리해질 수 있음**

6. '26년도 공공구매제도 변화(안)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제도 혁신대책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공구매제도 혁신대책 발표를 준비중

1.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 확대 추진 검토
2. 공공구매제품의 시장전환 신규 사업 설계 검토
3. 기업 규모에 따른 우선조달 금액 세분화 및 지역소상공인의 판로확대 지원책 검토
4. 혁신제품의 신청 루트를 다각화 하는 방향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제도 혁신대책 발표 시, 참여기업 대상 우선 자료 제공 통한 영업전략 설계 지원

- **참여기업의 평가를 통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선정제품 판로 확대 예산 증액 확보 필요**

감사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우선구매팀 / 042-712-5612)

